

## 2. 지표별 측정방법

지표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배점 : 2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기업이 명시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

### 측정기준

-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서(정관 등)의 구비 여부
- 사회적 목적의 대외 공표 여부

### 측정방법

- 계량 평가(문서 구비 및 대외 공표 여부 확인)



#### 기업 작성예시

**사회적  
목적**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①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문서\*를 확인
  -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또는 목표가 기재된 정관이나 규약(사회적기업 육성법)
- ② 사회적 목적의 대외적인 공표 여부를 확인
  - \* 기업 홈페이지/SNS 등에 정관 공개 또는 사회적 목적 명시,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사회적 협동조합 경영공시, 기업 홍보물/리플렛 등



## 등급기준

등급	점수	기준
A	2점	사회적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B	1점	사회적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음
C	0점	사회적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없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확인

- 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 사회적 목적의 대외 공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2

##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배점 : 5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계획 - 실행 - 점검 - 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

## 측정기준

- 사회적가치 측정기준, 담당인력, 활동내용, 결과 모니터링, 내·외부 공유 등 단계별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 측정방법

- 계량 평가(각 판단 요소별 증빙자료 구비 여부 확인)

판단 요소	내용
① 측정기준 (기업 자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 설정 여부)	<p><b>내용:</b> 기업의 자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별 기준 설정 여부</p> <p><b>방법:</b> 측정연도(2024년)의 <u>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또는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u> (<u>기업 자체 양식</u>) 등을 통해 사회적 성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e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span style="color: #0070C0; font-size: 1.5em;">✓</span> <b>조사자 안내 가이드</b>            기업의 업종 및 특성에 따라 개별기업이 상정하는 사회적 성과 목표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 기준을 설정하도록 안내         </div>
② 담당인력 (담당인력 지정 여부)	<p><b>내용:</b>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여부</p> <p><b>방법:</b> 기업 업무분장표 또는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u>대표자는 실적에서 제외</u></p>
③ 성과보고서 (사회적 성과 관련 추진 활동 결과)	<p><b>내용:</b> 기업이 자체 설정한 사회적 성과 목표에 따라 측정연도(2024년)에 추진한 활동 결과의 증빙자료 구축 여부</p> <p><b>방법:</b> 측정연도(2024년)의 <u>사업 결과보고서 또는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등 관련 활동 결과의 증빙</u> 여부 확인</p>



판단 요소	내용
④ 평가위원회 (내·외부위원위 촉 및 평가)	<p><b>내용:</b> 기업이 추진한 사회적 성과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 위원의 위촉* 및 평가 운영 여부</p> <p><b>방법:</b> 평가위원(내·외부)이 위촉되고, 평가 의견 및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span style="color: #0070C0; font-size: 1.5em;">✓</span> <b>조사자 안내 가이드</b> <p>평가위원에 대한 별도 자격 사항은 없으나,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위촉을 기업에 권고사항으로 안내 요망(내부위원만 위촉한 기업 대상)  <b>※ 2026년 측정(2025년 실적)부터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위촉 필수</b></p> </div>
⑤ 평가결과 사내공유	<p><b>내용:</b>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평가결과의 임직원 대상 공유 여부</p> <p><b>방법:</b> 사내 게시판 부착, 인트라넷, 메일 공지 등(증빙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료)을 활용한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공유 여부 확인</p>

## 등급기준

등급	점수	기준
S	5점	5가지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 중 5개 모두 구축
A	4점	5가지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 중 4개 구축
B	3점	5가지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 중 3개 구축
C	2점	5가지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 중 2개 구축
D	1점	5가지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 중 1개 구축
-	0점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가 확인되지 않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확인

- 2024년도 사업계획서(또는 사업 결과보고서) 및 업무분장표
- \* 기업의 자체 양식 활용이 가능하나, 1)사회적 성과 목표, 2)등급 기준, 3)추진 활동 내용, 4)등급 결과, 5)담당자(업무분장표) 등 포함 필수(확인 불가 시 해당 항목 실적 불인정)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제3장] 양식 참고)
- 사회적 성과 평가위원 위촉장([제3장] 양식 참고)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측정 시 유의사항

- 다음에 제시된 각 판단 요소에 대해 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해당 내용의 확인으로 단계별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수준을 측정

판단 요소	증빙자료 인정 범위
①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연도(2024년) 기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내에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 기준 기재 여부</li> <li>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 목표·등급 기재</li> <li>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성과관리 관련 자료 및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 평가 등</li> </ul>
② 담당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에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 명시 여부</li> <li>사회적 성과 관리보고서 상 담당자 기재(대표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로 증빙 확인</li> <li>*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고용보험 가입 불가인 경우, 근로계약서·급여대장을 통해 근로자성 확인 가능</li> </ul> </li> </ul>
③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연도(2024년) 기업의 사업 결과보고서 내 ‘사회적 성과 추진 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여부</li> <li>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 추진 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li> <li>기업 자체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외부 사회적 성과 평가자료 등(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불인정</li> <li>* ’24년도 자율경영공시 참여 확인서 캡처본(참여일 확인 가능) 인정</li> <li>*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평가 유효기간/협약기간 내 SVI 측정 시 인정</li> </ul> </li> </ul>
④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성과 평가위원 위촉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측정(2025년 실적)부터 최소 1인 이상 외부위원 위촉 필수</li> </ul> </li> <li>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서명 기재 여부 (연 1회 이상의 평가 운영 여부 확인)</li> <li>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내·외부 인사가 포함된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실적 인정</li> <li>외부의 전문적인 사회적 성과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을 시, 평가위원회를 갖추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li> </ul>
⑤ 평가결과 사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성과 추진 활동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임직원(또는 외부) 대상 공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li> <li>측정연도(‘24년도) 사업계획서 내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계획(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해연도(‘25년도) 작성한 성과보고서 및 사내공유 실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홈페이지 게재, 인트라넷 공유, 사내 게시판 부착 등</li> </ul> </li> </ul>

※ 5가지 세부 요소는 모두 개별적으로 측정 진행 및 점수 배점



#### 조사자 안내 가이드

소규모/신생 조직의 경우 5가지 판단 요소를 모두 갖추고 증빙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기업이 판단 요소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제3장. 증빙자료 서식 및 참고 예시」의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를 안내하여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 및 추진·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지표 3****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배점 : 15점

비례량 평가

**지표정의**

- 기업 내·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측정

**측정기준**

- 조직경영, 고용, 보건 및 안전 등 내부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가치 지향 정도
-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가치 지향 정도

**측정방법**

- 비례량 측정(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측정)

판단기준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5점)	<p><b>※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b></p> <p>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 항목만 작성</p> <p>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 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 경제기업은 ②번 항목만 작성</p> <p><b>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2점):</b>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대상으로 제시된 [부록] '참고자료 2'와 비교하여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24.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인원</li> <li>- (임금) '24.12월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li> </ul> <p>* 측정방법: 고용·임금 모두 동종업종 중위값 이상 경우 2점, 둘 중 1개만 중위값 이상 경우 1점, 둘 다 중위값 미만 경우 0점</p> <p><b>✓ 조사자 안내 가이드</b> 2024년(2025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사업보고서에 작성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임금수준 활용</p> <p><b>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2점):</b>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 노력 등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 등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측정</li> </ul> <p>* 측정방법: 上 2점 / 中 1점 / 下 0점</p> <p><b>✓ 조사자 안내 가이드</b></p> <p>(예) 색약보정 안경 제조를 위해 신규 채용 시 색약인 우대 (예)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 유기동물 입양 지원</p>

판단기준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p>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1점):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진료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등 활동 여부 확인</li> </ul> <p>* 측정방법: 상기 기재된 활동내역 증빙자료 유(1점) / 무(0점)</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p> <b>조사자 안내 가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강검진 수검은 해당하지 않음</li> <li>·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해당하지 않음</li> <li>· 기업 자체의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포함) 실적으로 불인정, 단 지표 9의 <u>실적으로 인정함</u></li> <li>· 유상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이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li> </ul> </div> <p>(예시) 근로자 보건 및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서기/흑한기 옥외작업 최소화, 산재예방 지원사업 참여</li> <li>•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지침(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li> <li>• 근로자 건강검진(기업 추가 검진)</li> <li>• 사고 및 재해 등 리스크 관리 계획 및 관련 서류</li> <li>• 정기적 안전점검 여부</li> <li>• 안전용품 비치, 근로자 보험 여부</li> <li>•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여부</li> <li>• 근로자 안전 또는 위험성 평가 전담인력 배치</li> <li>•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여부 이와 관련된 근무 기록</li> <li>• 안전 설비 확인 자료, 안전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록 여부</li> <li>• 안전 관련 용역 인력 구성 및 활용,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li> <li>• 직원의 정서 및 심리 지원 등</li> </ul> <p>* 기타 위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측정위원회가 판단하여 증빙되었을 시 인정</p> <p>④ 고용의 질(2점): 근로자 친화적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조성 노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 양립제도, 가족친화 기업 인증, 유연근무제 시행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수준을 확인</li> </ul> <p>* 측정방법: 上 2점 / 中 1점 / 下 0점</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p> <b>조사자 안내 가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의 질 관련 사항을 취업규칙/인사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점 부여</li> <li>· 고용의 질 관련 사항을 시행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인사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점 부여</li> <li>· 고용의 질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점 부여</li> </ul> </div>



판단기준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b>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10점)</b>	<p><b>※ 필수 확인사항(① / ② / ③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3개 항목(제품·서비스, 이용자, 기타)을 모두 작성할 필요 없으며, 항목별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li> <li>- 조사자는 기재된 내용의 수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총점 10점 내에서 1점 단위로 점수 부여)</li> </ul> <p>① <b>(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b>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정성적으로 측정</p> <p>② <b>(이용자의 사회가치)</b>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정성적으로 측정</p> <p>③ <b>(기타 사회가치)</b> 상기 항목 외에 외부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정성적으로 측정</p> <p>* 측정방법: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수준에 따라 1점~10점 사이의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및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면담시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가 인정될 경우 점수 부여</li> </ul> <p> <b>기업 작성예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측면</th> <th>분야</th> <th>대상</th> <th>활동</th> </tr> </thead> <tbody> <tr> <td>제품 서비스 판매</td> <td>지역경제 발전을 위해</td> <td>지역농가와 협력하여</td> <td>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td> </tr> <tr> <td>제품 서비스 생산</td> <td>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td> <td>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td> <td>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td> </tr> <tr> <td>이용자</td> <td>지역 환경개선을 위해</td> <td>청년을 대상으로</td> <td>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기업 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관련된 활동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의 측면, 분야, 대상, 활동을 설정하고 내용 기재(「사회적가치 사례」 참조)</li> <li>○ 기업의 작성에서 사회적가치 1) 측면, 2) 활동, 3) 분야, 4) 대상이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 개의 사례로 인정</li> <li>○ 사례 간 네 가지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사례와 분야, 대상,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예: 분야와 대상은 같으나 활동이 다를 때) 한 개의 사례로 추가 인정</li> <li>○ 기타 사례의 경우에도 타 측면의 사례와 명확하게 구분될 때 한 개의 사례로 인정(예: 푸드, 라이프스타일, 지속가능 패션, 폐기물 저감, 탄소배출량 감축 등)</li> </ul>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제품 서비스 판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서비스 생산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제품 서비스 판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서비스 생산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 사회적가치 사례

### ○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사례

측면	활동	분야	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	<p><b>소득창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투자, 제품 제작, 환원 및 기부, 인증, 교육, 협력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소득을 창출</li> <li>▪ 고용(사회적 소외계층 포함)과 이를 위한 시설투자</li> <li>▪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 제작 및 판매</li> <li>▪ 지역고유의 특산품 및 특징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li> <li>▪ 수익 환원 및 기부활동(예: 할인, 무상제공, 수익환원, 배송서비스)</li> <li>▪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인증을 받은 사례</li> <li>▪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예: 판로개척)</li> </ul>		
이용자와 이용자의 지역 개선 관련	<p><b>지역격차 해소, 기회 및 체험제공, 환경개선, 취약계층 생활개선, 홍보, 인식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활동, 지역자원 연계, 지역네트워크, 건강 및 보건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 격차 해소</li> <li>▪ 지역 주민(취약계층 포함)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문화 포함)</li> <li>▪ 지역 고유의 제품 및 문화 콘텐츠 개발</li> <li>▪ 지역시설 및 생활 환경의 개선</li> <li>▪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예: 무료 소독, 주거환경개선 등)</li> <li>▪ 장애인 생활개선(인식개선, 취업, 사회환원사업, 기술교육,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직업재활 및 주간 보호, 심리상담 및 적응, 장애인 기관 기부, 장애인 스포츠 지원, 기부)</li> <li>▪ 지역 및 지역주민(취약계층 포함)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 제작</li> <li>▪ 지역 인식개선 활동 및 프로그램 제작</li> <li>▪ 지역 환경인식개선 활동 및 프로그램 제작</li> <li>▪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교육, 판매, 프로그램 제작</li> <li>▪ 지역사회문제 인지를 통한 미래세대의 인식변화</li> <li>▪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li> <li>▪ 지역문화 활동의 체험판로 확보</li> <li>▪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발달장애인 정신건강 포함)</li> <li>▪ 지역주민의 자원 연계서비스 활동</li> <li>▪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li> </ul>	환경, 교육, 경제, 건강 및 보건, 안전, 기술(테크), 지역, 복지(장애인, 돌봄 등), 인권, 문화, 도시재생, 전통시장, 관광, 도농교류, 저출산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 아동, 반려동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예술가, 청소년, 지역농가(또는 복수의 대상인 경우: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 ✓ 조사자 안내 가이드

면담 질문	평가 착안사항
1. (측면)기업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비전에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li> </ul>
2. (분야)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무엇이며, 왜 그 러한 분야에 집중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사회의 명확한 문제의식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를 선정하였다</li> <li>✓ 기업이 제시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는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가치 활동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li> <li>✓ 기업의 사회적가치 활동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li> <li>✓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는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와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li> </ul>
3. (대상)기업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해 기여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대상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li> <li>✓ 기업은 사업의 영위하는 지역의 사회적가치 대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대상을 선정하였다</li> <li>✓ 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대상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li> </ul>
4. (활동)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집중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사회적가치 활동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li> <li>✓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 기업의 주/부사업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지속가능성이 있다</li> <li>✓ 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임여자원(인력, 자본)을 투입한 사례가 있다</li> </ul>
5. (종합)기업의 외부활동(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이용자)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이용자의 지역개선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활동, 분야, 대상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li> </ul>

### 등급기준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5점	S	5점	4가지의 각 착안사항별 점수의 합산										
		A	4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착안사항 항목</th> <th>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번</td> <td>②번</td> <td>2점</td> </tr> <tr> <td>③번</td> <td>④번</td> <td>1점</td> </tr> <tr> <td colspan="2">계(총점)</td> <td>2점</td> </tr> </tbody> </table>	착안사항 항목		항목 점수	①번	②번	2점	③번	④번	1점	계(총점)
착안사항 항목		항목 점수												
①번	②번	2점												
③번	④번	1점												
계(총점)		2점												
B	3점													
C	2점													
D	1점													
-	0점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10점	S	9~10점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실현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										
		A	7~8점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실현 수준이 우수하다.										
		B	5~6점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실현 수준이 보통이다.										
		C	3~4점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실현 수준이 미흡하다.										
		D	1~2점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실현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	0점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실현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24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4년 12월 임금대장  
\*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한정
- 기업 내부 문화 형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고용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조사자 안내 가이드

착안사항	증빙자료 예시	
취약계층 고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근무시간표 등(취약계층 구분, 총 근로 시간 명시)</li> <li>• 2024년(2025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사업보고서에 작성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임금수준 활용</li> </ul>
근로자 보건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매뉴얼, 산재예방 조치 등 근로자 안전 강화 관련 증빙자료</li> </ul>
고용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에 취약계층 및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포함 여부 등</li> <li>•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부 등 고용의 질 관련 증빙자료</li> </ul>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대상 범주를 모두 제시하고 자기기입식 체크리스트</li>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저소득층 확인서, 의료급여증 등</li> <li>•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확인서, 부양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등</li> <li>• 여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일체</li> <li>•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li> <li>•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유치원/어린이집 등록 확인서</li> <li>• 반려동물 등록증, 예방접종 증명서, 동물의료기록 건강검진 증명서 등</li> <li>• 한부모가족 증명서</li> <li>• 다문화가족 확인서</li> <li>• 예술활동 증명서</li> <li>• 청소년증, 학생증</li> <li>•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농지대장, 농업경영 계획서</li> <li>•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증명서, 인증서</li> <li>• 친환경 소재 공급업체와의 거래 내역서, 계약서</li> <li>• 이용자 공유협약서</li> <li>• 사회적가치성과보고서</li> <li>• 활동 참여기록, 활동보고서</li> <li>• 활동사진 및 동영상</li> <li>• 활동 전후 비교 사진 및 설명자료</li> <li>• 이용자 피드백 자료, 인터뷰자료</li> <li>• 공로패, 감사장</li> </ul>

\* 위 증빙자료는 예시이며 측정자가 면담시 또는 위의 증빙자료외 자료를 판단 후 인정할 수 있음



## 지표 4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상호협력 활동 수준을 측정

## 측정기준

-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상호협력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의 수

## 측정방법

-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내용 및 협력기관 수를 측정



## 기업 작성예시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표준화 및 브랜드화,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 사회적기업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 미술, 감각 재활 등 일상훈련 공동프로그램 진행	연 2회

-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벤처를 의미하며 협의체는 이들 조직의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
- ② 협력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증대, 기술 및 자원공유,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위험 분산,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정책적 영향력 제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목적과 형태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함
- ③ 협력활동의 인정범위는 기업의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만 인정(주·부 사업영역 외 기관 차원의 봉사활동 및 대표자 재능기부 활동 등은 불인정)
-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연 2회 이상) 협력활동만 인정
- ⑤ 사회적경제기업 간 구매·판매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 조사자 안내 가이드

- 기업의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구매 및 판매실적을 인정하며, 단순한 소모성 제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음
- (예비)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의 경우, 측정일을 기준으로 seis.or.kr 또는 data.go.kr에서, 소셜벤처와의 협력 사례의 경우 sv.kibo.or.kr\*에서 협력 기업에 대해 확인하며, 측정 당시 지정기간 만료, 반납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거래 당시 사회적경제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시가 필요함
- \* 소셜벤처는 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 확인시 실적 인정
- 사회적경제기업간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도 협력활동으로 인정

## 등급기준

등급	점수	기준
S	5점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A	4점	4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B	3점	3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C	2점	2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D	1점	1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0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선택 확인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관련 양해각서(MOU)(협력기관명, 목적, 협력범위 및 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포함) 문건,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 협의체 회원사 명단, 협의체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협력활동 관련 계약(협약)서 및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 인적 대상 활동인 경우 참여자 명단 첨부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조사자 안내 가이드

- 측정연도(202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 실적 인정
- 측정연도(2024년) 이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경우, 2024년에 실질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측정 시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외 공공·민간기관 등과 협력활동은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
-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
- 기업이 제시한 협력활동 실적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만 인정



## 지표 5

##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수준을 측정

## 측정기준

-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상호협력을 하는 지역사회의 기관 수

## 측정방법

-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상호협력을 하는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 수 측정



## 기업 작성예시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2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2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① 지역은 시·도의 관할 구역,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 ②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협의체 외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 포함
  -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 ③ 협력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증대, 기술 및 자원공유,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위험 분산,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정책적 영향력 제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목적과 형태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함
-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연 2회 이상) 협력활동만 인정
- ⑤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 판매·구매실적은 협력활동으로 인정



## 조사자 안내 가이드

-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구매 및 판매실적을 인정하며, 단순한 소모성 제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음
- 대학과 대학 내 산단은 법인 형태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실적 인정
- 지자체의 여러 과와 거래했더라도 기관은 1개로 인정(ex. 경기도청 A과와 경기도청 B과 2개과와 각각 거래하였더라도 1건으로만 인정)
- 단순한 교육참여의 경우는 불인정하며, 해당기관과의 협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ex. 지역자원봉사센터의 1365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기관 관리자 교육에 참여한 내역 등과 같은 단순 교육참여는 불인정)
- 기업의 비경제적 분야에서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협력활동은 인정
  -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 사업

## 등급기준

등급	점수	기준
S	5점	7개 이상의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A	4점	5~6개의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B	3점	3~4개의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C	2점	2개의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D	1점	1개의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0점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선택 확인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양해각서(MOU)(협력기관명, 목적, 협력범위 및 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포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을 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 인적 대상 활동인 경우 참여자 명단 첨부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 조사자 안내 가이드

- 측정연도(202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 실적 인정
- 측정연도(2024년) 이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경우, 2024년에 실질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측정 시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은 ‘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
-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
- 기업이 제시한 협력활동 실적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만 인정

**지표 6****사회적 환원 노력도**

배점 : 10점

비계량 평가

**지표정의**

-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측정

**측정기준**

- 기업 내·외부 운영에 대한 투자, 지원 등 수익의 활용내역 및 수준을 확인
- 비금전적인 기타 조직의 역량 활용내역 및 수준을 확인

**측정방법**

- 비계량 측정(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측정)

판단기준	착안 사항
<b>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3점)</b>	<p>① <b>복리후생비</b>: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내역 확인            - 측정방법: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이 있을 시 1점 / 없을 시 0점</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p><b>✓ 조사자 안내 가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유회 경비, 경조사비, 통근 차량 제공에 따른 비용, 창립기념일/ 명절/생일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물 비용 등</li> <li>· 보건건강(유상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사회적 환원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리후생과는 협의의 의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실적에서 제외(지표 3에서 측정)</li> </ul> </div> <p>② <b>근로자 성과급</b>: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전 지급 내역만 인정            (근로계약서 상 명기되지 않은 인센티브 내역)            - 측정방법: 성과급 지급내역 있을 시 1점 / 없을 시 0점</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p><b>✓ 조사자 안내 가이드</b></p> <p>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상여금 불인정</p> </div> <p>③ <b>시설투자비</b>: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확인            - 측정방법: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이 있을 시 1점 / 없을 시 0점</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p><b>✓ 조사자 안내 가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단순 소모성 제품 구입이나 사업 운영을 위한 재화/서비스 구매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li> <li>· 기술 개발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는 14번 지표 (혁신노력도)에 반영</li> </ul> </div>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의 금액합산 실적을 [부록] '참고자료 3'을 참조하여 동종업종 내 평균값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방법: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과 사회서비스 제공 환산금액을 합산한 실적의 평균값을 구간별로 계량측정</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간</th><th>0%이하 (0원이하)</th><th>0%초과 ~ 25%이하</th><th>25%초과 ~ 50%이하</th><th>50%초과 ~ 75%이하</th><th>75%초과 ~ 100%이하</th><th>100%초과 (평균초과)</th></tr> </thead> <tbody> <tr> <td>점수</td><td>0점</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r> </tbody> </table>							구간	0%이하 (0원이하)	0%초과 ~ 25%이하	25%초과 ~ 50%이하	50%초과 ~ 75%이하	75%초과 ~ 100%이하	100%초과 (평균초과)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구간	0%이하 (0원이하)	0%초과 ~ 25%이하	25%초과 ~ 50%이하	50%초과 ~ 75%이하	75%초과 ~ 100%이하	100%초과 (평균초과)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p> <b>조사자 안내 가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재투자는 현금 및 현물 기부 해당(기부금 영수증 확인)</li> <li>·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lt;사회서비스의 범위&gt;」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산금액*을 기재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li> </ul> <p>* 환산금액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p>																						
<b>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2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내역(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방법: 활동내역이 있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일 시 2점 / 활동내역이 있으나, 연 1회 이하로 비정기적일 시 1점 / 활동내역이 없을 시 0점)</li> </ul> </li> </ul>																				



## 등급기준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 준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3점	A	3점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이윤)의 활용 정도가 우수하다.
		B	2점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이윤)의 활용 정도가 보통이다.
		C	1점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이윤)의 활용 정도가 미흡하다.
		-	0점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이윤)의 활용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5점	S	5점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
		A	4점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이 우수하다.
		B	3점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이 보통이다.
		C	2점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흡하다.
		D	1점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	0점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기타 조직의 비금전적 역량 활용	2점	A	2점	조직역량을 활용한 비금전적 활동 수준이 우수하다.
		B	1점	조직역량을 활용한 비금전적 활동 수준이 보통이다.
		-	0점	조직역량을 활용한 비금전적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조직 내부활용: 2024년 복리후생비 관련 기안서 및 지출증빙, 근로자 성과급 지급 관련 기안서 및 이체확인서,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 외부활용: 2024년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2024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측정 시 유의사항

- 기타 조직의 비금전적 역량활용에 대해 정기·지속적인지를 파악하며 단발성 활동은 불인정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은 업종별 측정기준표에 제시된 평균값으로 동종업종 내 수준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측정
- 기업이 작성한 활동내용 및 내역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점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측정



### 조사자 안내 가이드

구분	증빙서류 예시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및 성과급 지급내역 증빙자료</li> <li>-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시설비 지출내역, 재무제표 등</li> </ul>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영수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li> </ul>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li> </ul>

- ① 기업의 업종 분류는 [부록] 내 ‘참고자료 1’을 참고
  - \*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 업종(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측정
- ②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과 사회서비스 제공 금액의 비교는 [부록] 내 ‘참고자료 3’을 참고
- ③ 지역사회 재투자 대상은 지표 3 ‘사회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의 기업 주·부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 아동, 반려동물, 다문화가정, 예술가, 청소년, 지역농가에 대한 투자 실적을 인정(기타 대상의 경우 측정자 판단에 따라 인정 가능)
- ④ 기업의 증빙자료는 자신의 1) 주·부 사업, 2) 주·부 사업에 관련된 수익 활용의 사업 대상, 3) 수익활용 금액을 반드시 제시
  - \* 부사업은 주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부사업으로 인정



## 지표 7

##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배점 : 5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사외이사 등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해당 인원의 참여율과 의사결정기구 운영 결과를 임직원 대상으로 공유한 실적을 측정

## 측정기준

- 근로자 측 인사와 사외이사(이해관계자 포함) 등이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한 비율 확인
-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비율 확인

## 측정방법

- 계량 측정(근로자 측 인사 및 사외이사 등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도 확인)



## 기업 작성예시

의사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주된 의사결정구조	2024.2.10	O	4명	2명	1명	-
합계		1	4	2	1	

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 (사외이사 + 근로자 인사 + 조합원) / 총 참가인원 } X 100 (%)
회의결과 공유 비율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횟수 /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X 100 (%)

- 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와 같이 조직의 중요사항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를 의미 (주주총회 및 직원총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② 구성원 별 참여비율 평균은 회의 당 구성원의 모든 숫자를 합한 후 전체 참가 비율로 산출
  -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 감사는 총 참가인원에만 해당

비율 산출식 :  $\frac{\text{사외이사} + \text{근로자인사} + \text{조합원}}{\text{사외이사} + \text{근로자인사} + \text{조합원} + \text{대표이사} + \text{근로자대표가 아닌 사내이사} + \text{감사}}$
- ③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회의록, 참여자 명부 등)를 통해 실제로 의사결정기구가 운영되었는지, 해당인사가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
- ④ 사외이사, 근로자인사(대표), 조합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사내이사, 감사는 등기부등본 상 등재

여부 또는 선출동의서, 위원명부, 조합원 명단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

※ 이사 및 감사는 등기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미등기 이사가 있을 경우  
별도 증빙 확인

- ⑤ 회의실적은 회계연도 내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있어야 함(미충족 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시정명령 조치 사항으로 해당 지표 0점 부여)
- ⑥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등 조직 형태에 따른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실적 반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이사회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위원회 등 운영 가능
  -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 실적 인정

### 등급기준

구분	등급	점수	기 준
의사결정기구 참가비율	A	3점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60% 이상
	B	2점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40% 이상 60% 미만
	C	1점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0% 이상 40% 미만
회의결과 공유	A	2점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이상
	B	1점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미만
-	0점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 회의실적이 회계연도 내 반기별 1회 미만일 경우 해당 지표 0점 부여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선택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운영위원회 등 구성원 명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서명)
-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 임직원 교육 사진 등 회의결과의 임직원 대상 공유 여부 증빙자료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측정 시 유의사항

#### ○ 의사결정기구별 회의록 등을 점검하여 실제로 해당 날짜에 회의 개최 여부 및 관련 인사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해 확인



## 지표 8

## 근로자 임금수준

배점 : 8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기업의 근로자 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대표지표로 측정

## 측정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종업종의 시급 대비 근로자 실제 시급 분포 확인

## 측정방법

- 계량 측정(동종업종 대비 기업의 유급근로자 평균시급의 분포 확인)



## 기업 작성예시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37,239,200 원	3,532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10,543 원/시간	

## ※ 유급근로자 정의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이며,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

## ※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단위: 원) 산식

- = 근로자 12월 총 급여(임금대장 상 세전급여 지급내역 확인) ÷ 12월 총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상 기재내역 확인)

##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산식(필요시 뒷면 조사자 안내가이드 예시 참조)

$$= \sum_{\text{근로자별}} \text{주 근무시간} \times 4.34$$

\* 1년 평균 52.1주를 기준으로, 월 평균 4.34주로 산정

(계산 예시) 전체 근로자 수 총 5명(주 40시간 4명 / 주 35시간 1명)일 경우,  
 $(40시간*4.34*4명) + (35시간*4.34*1명) = 846.3시간$

- ①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 2024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총 급여 (단위 : 원)
- ②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 2024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 ③ 기업의 업종 분류는 [부록] 내 '참고자료 1' 참고(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측정)
- ④ 업종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평균 수준은 [부록] 내 '참고자료 4'를 참고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월급 기준: 2,060,740원)

- ⑤ 2024년 12월 기준 급여 지급내역을 참고하여 세전 총 급여 확인

- ⑥ 2024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2024년 12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확인이 가능한 일체 자료(출퇴근 카드기록 등)을 확인하여 기업 기재 내용 검토

조사자 안내 가이드

2024년(2025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사업보고서에 작성한 근로자 임금수준 활용

### 등급기준

등급	점수	기준
S	8.0점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80% 이상
A	6.4점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4.8점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3.2점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6점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미만

### 측정 활용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24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2024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및 근로자의 총 급여지급 자료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 가능한 자료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2024년(2025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유급근로자 명부에 작성한 근로자 급여 및 근무시간 활용

### 측정 시 유의사항

- 측정편의성을 위해 근로자 개별인원의 시급 산정이 아닌 단순 산술평균으로 전체 유급 근로자의 '총 급여'(대표자 제외)를 '총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임금평균을 도출하고, 이를 '업종별 측정기준표'의 동종업종과 비교·확인

작성 가이드

(예시)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계산 산식

전체 근로자 수('24.12.31. 고용보험내역 기준)	5명
근로자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 4명 주 35시간 1명
(계산식) $(40\text{시간} \times 4.34\text{주} \times 4\text{명}) + (35\text{시간} \times 4.34\text{주} \times 1\text{명}) = 846.3\text{시간}$	



## 지표 9

##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배점 : 5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기업이 근로자 지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지표는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도를 측정

## 측정기준

-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한 직무교육 및 관련 교육(자격이수, 학교진학 등) 등 근로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한하여 1인당 근로자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 훈련비 지출내역을 확인

## 측정방법

- 계량 지표(교육 과정별 1인당 교육시간의 합계와 교육훈련비 지출내역을 확인)



## 기업 작성예시

## ① 1인당 교육시간

영역	교육과정 명	전체 근로자 수(A)	교육 수혜자 수(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B*C/A
법정의무 교육 외	외부 리더십교육(5회)	지표 10번 '고용성과' 확인 (24년 유급 근로자 수)			
	외부 회계교육(1개월 과정)				
	내부 직무(기술)교육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 ① 아래의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시수에서 불인정되며, 또한 기업의 사업영역과 관련성이 적은 교육도 조사자 판단에 따라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

- ② 직무와 관련된 업종별 의무교육은 실적 인정

\* 예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③ 기업 내외부 인정 교육과정 예시

- 사내교육: 1) 외부 교육자: 전문가 초빙·수강을 통한 교육 등 2) 내부 교육자: 경력자(선임자 등)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 신입사원 교육, 인수인계 교육, 내부 학습조직, 멘토링 등

- 사외교육: 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등

④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는 인정 교육내용 예시

- 사회적경제 기초 및 사례 교육

- 경영 기획·전략,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판로 교육

- 오피스 사무자동화 교육

- 리더십·팔로우십 교육

- 학습 동아리 등 정기적인 학습조직

⑤ 전체 근로자 수 : 2024년 12월 기준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대표자는 제외)로 일괄 적용

⑥ 근로자 1인당 1개의 교육과정에서 최대 교육인정시간은 50시간 내로 제한

⑦ 특정 교육과정의 수혜자 수가 2024년 12월 유급근로자 수보다 많은 경우, 교육 수혜자 수는 2024년 1월~12월 중 가장 많은 전체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실적 인정(전체 근로자 수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동일)

## ② 교육훈련비 지출 내역

-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24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 확인
- 측정방법: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 있을 시 1점 / 없을 시 0점



### 조사자 안내 가이드

- 근로자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교육훈련비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 인정
- 교육훈련비 지급증빙 외 교육 수혜자, 교육과정 등 확인 필요
- 근로자가 선택한 도서 구입 지원 금액은 인정하나, 기업의 신문 및 잡지구독료는 제외

## 등급기준

구분	등급	점수	기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4점)	A	4점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5시간 이상
	B	3점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C	2점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D	1점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미만
	-	0점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시간이 확인되지 않음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 (1점)	A	1점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 있음
	B	0점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 없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선택 확인

- 2024년 12월 고용보험내역
  - \* 2024년(2025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유급급로자 명부에 작성한 근로자 인원 활용
- 교육시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자격 이수증, 교육 참석사진 등)
- 교육과정별 결과보고(기업 자체양식 활용가능)
  - \* 자체양식 활용 시, 1)교육수혜자 수, 2)교육시간 항목 포함필수(1인당 교육시간 산정)
- 교육 결과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측정 시 유의사항

### ○ 인정 기준은 자격 이수증, 교육 수료증, 교육결과 보고서, 수강확인증 등 공식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생 명부(서명)을 포함한 교육실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등이 있으면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



### 조사자 안내 가이드

조직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일시 및 내용, 참석자 수 등 항목의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장점검 시 내부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증빙이 부족한 기업은 [제3장] ‘교육 결과보고서’를 안내하여 향후 명문화하도록 유도

## 지표 10

## 고용성과

배점 : 10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고용창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측정기준

- 총 유급근로자 수와 고용성장률을 동종업종의 측정기준표 대비 수준 비교

## 측정방법

- 계량 지표(동종업종 대비 총 유급근로자 수, 직전년도와 비교한 고용성장률 확인)



## 기업 작성예시

(단위: 명, %)

2024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23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고용성장률 $[(a-b) \div b] \times 100\%$	

$$\text{고용 성장률 (\%)} = \frac{('24.12.) \text{총 유급근로자수} (a) - ('23.12.) \text{총 유급근로자수} (b)}{('23.12.) \text{총 유급근로자수} (b)} \times 100$$

\* 총 유급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반드시 고용성장률에 (-)부호를 작성(성장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 ① 측정기업의 매출액으로 [부록] ‘참고자료 1’의 매출액 기준과 비교하여 중기업과 소기업을 판단한 후, 중기업인 경우 ‘중기업용’으로 소기업인 경우 ‘소기업용’으로 측정
- ② 총 유급근로자 수: 총 유급근로자 수(12월 고용보험내역)를 ‘업종별 측정기준표’와 비교
  - 측정방법: 2024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총 유급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부록]의 ‘참고자료 5’ 또는 ‘참고자료 6’과 비교하여 측정기업의 수준 확인
- ③ 고용성장률: 측정연도(2024년)와 직전년도(2023년)의 총 유급근로자 수를 비교

등급(점수)	측정기준
A(4점)	총 유급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
B(2.5점)	총 유급근로자가 전년과 동일
C(1점)	총 유급근로자가 전년대비 감소

\* 측정연도(2024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고용성장률은 중간 값(2.5점) 일괄 부여

\*\* 직전년도(2023년) 총 유급근로자가 0일 경우 중간 값(2.5점) 일괄 부여



## 등급기준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유급 근로자수	6점	S	6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A	4.8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3.6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4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2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대비 20% 미만
고용 성장률	4점	A	4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
		B	2.5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전년과 동일
		C	1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24년 12월, 2023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 2024년(2025년 4월 제출) 및 2023년(2024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유급근로자 명부에 작성한 근로자 인원 활용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측정 시 유의사항

### ○ 유급근로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이며,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

## 지표 11

## 매출성과

배점 : 10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측정

## 측정기준

- 총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동종업종 대비 수준을 비교

## 측정방법

- 계량 지표(동종업종 대비 총 매출액, 직전년도와 비교한 매출액 성장률 확인)



## 기업 작성예시

(단위: 원, %)

2024년도 매출액 (a)	2023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text{매출액 성장률} (\%) = \frac{2024\text{년 매출액} (a) - 2023\text{년 매출액} (b)}{2023\text{년 매출액} (b)} \times 100$$

\*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반드시 매출액 성장률에 (-)부호를 표기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① 측정기업의 매출액으로 [부록] ‘참고자료 1’의 매출액 기준과 비교하여 중기업과 소기업을 판단한 후, 중기업인 경우 ‘중기업용’으로 소기업인 경우 ‘소기업용’으로 측정
  - ② 총 매출액: 기업의 매출액(2024년 재무제표 기준)을 ‘업종별 측정기준표’ 대비 비교
    - 측정방법: 2024년 재무제표 상 매출액과 [부록]의 ‘참고자료 7’ 또는 ‘참고자료 8’과 비교하여 측정기업의 분포 수준 확인
  - ③ 매출액 성장률: 직전년도(2023년) 대비 측정연도(2024년)의 매출액 성장률을 ‘업종별 측정기준표’에서 동종업종 대비 분포 수준 확인
    - 측정방법: 매출액 성장률을 계산하여, [부록]의 ‘참고자료 9’ 또는 ‘참고자료 10’ 동종업종 대비 분포 수준 확인
- \* 측정연도(2024년)에 설립된 신규기업 매출액 성장률은 C등급(2점) 일괄 부여  
 \*\* 휴업 등으로 직전년도(2023년) 매출액이 0일 경우 C등급(2점) 일괄 부여



## 등급기준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 준
매출액	6점	S	6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A	4.8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3.6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4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2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매출액 성장률	4점	A	4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3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24년, 2023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 2024년(2025년 4월 제출) 및 2023년(2024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첨부한 재무제표 활용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12

## 영업성과

배점 : 5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측정

## 측정기준

- 기업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성장률을 동종업종 대비 해당 수준 비교

## 측정방법

- 계량 지표(동종업종 대비 기업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성장률 확인)



## 기업 작성예시

(단위: 원, %)

2024년도 영업이익 (a)	2023년도 영업이익 (b)
영업이익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text{영업이익 성장률 (\%)} = \frac{2024\text{년 영업이익} - 2023\text{년 영업이익}}{2023\text{년 영업이익}} \times 100$$

\*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영업이익에 (-)부호를 표기

① 측정기업의 매출액으로 [부록] '참고자료 1'의 매출액 기준과 비교하여 중기업과 소기업을 판단한 후, 중기업인 경우 '중기업용'으로 소기업인 경우 '소기업용'으로 측정

② 영업이익: 2024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록]의 '참고자료 11' 또는 '참고자료 12'와 비교 및 분포 확인

③ 영업이익 성장률: 직전년도(2023년) 대비 측정연도(2024년)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업종별 측정 기준표'에서 동종업종 대비 분포 수준 확인

- 측정방법: 영업이익 성장률을 계산하여, [부록]의 '참고자료 13' 또는 '참고자료 14' 동종업종 대비 분포 수준 확인

\* 측정연도(2024년)에 설립된 신규기업 영업이익 성장률은 중간 값(1.5점) 일괄부여

\*\* 휴업 등으로 직전년도(2023년) 영업이익이 0일 경우 중간 값(1.5점) 일괄부여



## 등급기준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영업이익	3점	A	3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60% 이상
		B	2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미만
영업이익 성장률	2점	A	2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1.5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24년, 2023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 2024년(2025년 4월 제출) 및 2023년(2024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첨부한 재무제표 활용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13

## 노동생산성

배점 : 5점

계량 평가

##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지표인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측정

## 측정기준

-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동종업종 대비 해당 수준을 비교

## 측정방법

- 계량 지표(동종업종 대비 근무시간 당 매출액과 근무시간 당 매출액 성장률을 확인)



## 기업 작성예시

(단위: 원, 시간)

2024년 매출액(a)	2024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2024년 노동생산성 ( $c = a \div b$ )

2023년 매출액(d)	2023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e)

2023년 노동생산성 ( $f = d \div e$ )노동생산성 성장률  $((c-f) \div f) \times 100\%$ 

$$\text{노동생산성} = \frac{2024\text{년 매출액}(a)}{2024\text{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text{노동생산성 성장률 (\%)} = \frac{2024\text{년 노동생산성} - 2023\text{년 노동생산성}}{2023\text{년 노동생산성}} \times 100$$

① 측정기업의 매출액으로 [부록] '참고자료 1'의 매출액 기준과 비교하여 중기업과 소기업을 판단한 후, 중기업인 경우 '중기업용'으로 소기업인 경우 '소기업용'으로 측정

② 노동생산성: 2024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2024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등재된 총 유급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상기 수식을 활용한 노동생산성 도출

\*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기준은 '지표 8. 근로자 임금수준'과 동일



- 측정방법: 노동생산성을 계산하여, [부록]의 '참고자료 15' 또는 '참고자료 16' 동종업종 대비 분포 수준 확인
- ③ 노동생산성 성장률: 직전년도(2023년) 대비 측정연도(2024년)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업종별 측정기준표'에서 동종업종 대비 분포 수준 확인
- 측정방법: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계산하여, [부록]의 '참고자료 17' 또는 '참고자료 18' 동종업종 대비 분포 수준 확인
  - \* 측정연도(2024년)에 설립된 신규기업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중간 값(1.5점) 일괄부여
  - \*\* 휴업 등으로 직전년도(2023년) 노동생산성이 0일 경우 중간 값(1.5점) 일괄부여

## 등급기준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노동 생산성	3점	A	3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B	2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노동 생산성 성장률	2점	A	2점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1.5점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 측정 활용자료

###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24년,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이 확인 가능한 자료
  - \* 2024년(2025년 4월 제출) 및 2023년(2024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유급근로자 명부에 작성한 근무시간 활용
- 2024년, 2023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 2024년(2025년 4월 제출) 및 2023년(2024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시 첨부한 재무제표 활용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14

## 혁신노력도

배점 : 10점

비례량 평가

## 지표정의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

## 측정기준

- 주 사업활동과 관련된 혁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각 판단 요소를 확인 및 측정

## 측정방법

- 비례량 측정(구분별 각 착안사항에 대한 혁신활동 내용 확인 및 측정)

 **기업 작성예시**

구분	착안사항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u>자유롭게 기재</u>
<b>과정의 혁신 (5점)</b>	<b>혁신노력</b>	<b>분야</b>
	투입의 혁신	<p>① (<b>전문인력 도입</b>)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채용내역 등 * 기술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자 등 전문인력 자격 사항은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p> <p>② (<b>R&amp;D 투자</b>)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 등</p>
<b>혁신의 결과 (5점)</b>	활동의 혁신	<p>③ (<b>경영시스템 개선</b>)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 웨어 도입 등 경영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p> <p>④ (<b>기업 내·외부 소통노력</b>) Bottom-up 방식의 사내 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 의견 수용 내용 등</p> <p>⑤ (<b>기술 개발</b>)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등 설치, 신제품 출시 등</p>
	* ( <b>기타</b> )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 노력 기재	
		*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u>정량적으로</u> 기재
		<p>① (<b>재무 성과</b>)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투자 유치 또는 지원사업 선정 등 과정의 혁신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가 또는 비용 감소 등</p> <p>② (<b>고객 만족</b>) 이용자 수 증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재구매율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등</p> <p>③ (<b>기술적 성과</b>)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원·등록, ISO 등 국제 인증 여부 등</p>
		*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3년 이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인정
		④ ( <b>기타</b> )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 조사자 안내 가이드

- ① 혁신노력도 지표는 **최근 2년간(2023,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측정,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3년 이전에 등록된 실적도 인정
- ② 또한, 점수 부여는 기업이 기재내용에 따라 조사자가 측정·판단하여 각 구분별(과정의 혁신 / 혁신의 결과)로 각각 5점 이내에서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③ 각 부문별 사례 여부는 혁신노력도 평가참조 사항 확인 후 조사자가 정성적으로 결정
  - \* '혁신의 결과' 평가 시 '과정의 혁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부여
  - \* '과정의 혁신'과 '혁신의 결과' 평가시 기타에 대한 혁신 노력은 평가참조사항의 예와 중복되지 않을 때 인정
- ④ 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사례로서 측정자가 면담시 인정할 때는 혁신으로 인정



## 조사자 안내 가이드

면담 질문	평가 착안사항
1. (투입)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을 위해 투입한 인력/예산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의 내용이 기업내부 경영선진화와 효율화 달성을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li> <li>✓ 투입의 내용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명확하게 기여하고 있다</li> <li>✓ 투입의 내용이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명확하기 기여하고 있다(예: R&amp;D투자, 투자 유치 여부)</li> <li>✓ 투입의 내용이 기업의 조직개편 및 조직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li> </ul>
2. (활동)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개선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경영시스템, 내·외부소통, 기술개발 차원에서 말씀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을 통한 경영선진화의 내용이 사내 규정 등으로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다</li> <li>✓ 기업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 및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li> <li>✓ 기업 내·외부 의사소통이 실제 경영선진화의 제도 개선 또는 기술(제품)개발로 연계된 사례가 있다</li> <li>✓ 투입활동이 제품개발, 판매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활동에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예: 마케팅 인력 투입으로 인한 판로 확보)</li> </ul>
3. (결과)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의 결과를 재무, 고객, 기술적 측면에서 말씀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 11, 지표 12와 관련한 재무적 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li> <li>✓ 기업의 간접 활동 성과가 재무적 성과와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예: 신규 거래처 확보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 확인)</li> <li>✓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있으며 충분한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다</li> <li>✓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재무적 성과 또는 기술적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li> <li>✓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의 특허, 인증, 벤치마킹 사례, 직원의 표창 등의 사례가 있다</li> <li>✓ 투입, 활동, 결과의 사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예: 연구개발 인력 채용으로 기술 개발 활동을 통해 매출 증가를 달성하였다)</li> </ul>

\* 측정방법: 면담 및 증빙자료(기업의 사업계획서, 사업 결과 보고서 등)에 따라 평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p. 58~60의 각 단계별 평가 착안사항 표를 참조

## 평가착안사항

### ○ 다음의 세부 착안사항을 확인

- 면담시 다음의 「평가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질문을 통해 다음의 혁신 사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측정
- 다음의 평가착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항이라도 측정자가 혁신이라고 판단했을 시 인정

#### ① 과정의 혁신 투입 평가 착안사항

투입의 혁신	내용	혁신 노력 착안사항	분야
인력투입	전문인력도입	기업 경영 선진화와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도입한 사례 여부	기획, 행정, 회계, 재무, 인사, 안전, IT, 복지, 사회공헌, 홍보 인력 도입
		제품 생산을 촉진시키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도입한 사례 여부	제품 및 사업 개발, 생산,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인력 도입
		기업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	사외이사, 전문가 자문, 전문컨설팅 사례
예산투입	R&D 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제품개발투자, 디자인개발, 특허 및 상표 등록, 기술개발, 산학협력기술 개발, 기술이전, 제품인증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다음의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설비 도입, 온라인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부서 운영을 위해 다음의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부설연구소, 연구개발 별도 부서 운영



## ② 과정의 혁신 활동 평가 착안사항

활동의 혁신	내용	혁신 노력 착안사항	분야
혁신활동	경영시스템 개선	조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제도 개선의 사례 여부	기업역량 진단, 조직진단, 조직개편, 전략수립, 회계프로그램 도입, ERP 시스템 구축, 행정프로그램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경영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제도 개선의 사례 여부	성과제도 구축, 기관간 업무 협약, 전문가 자문, 전문인력 협력, 성과관리제도 도입, KPI를 통한 사업관리, 행정시스템 개선
		조직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사 및 근무제도 개선 사례 여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현장 및 시차출퇴근제
	기업 내외부 소통 노력	기업 내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활동과 제도 개선 사례 여부	설문조사, 소통채널 구축, 노사협의회 구축, 연수 및 회의 방식 개선,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결재라인 최소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구축
		기업 외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활동과 제도 개선 사례 여부	SNS 채널, 시민참여 행사, 시민참여 제안,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 지역사회 참여 유도 사례
	기술개발	제품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여부	경쟁사 분석, 제품만족도 조사, 제품체험단, 크라우드 펀딩, 홍보, 사업공모 참여, 외부기관 업무협의, 거래처 발굴, 정부사업참여, 온라인판매 채널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여부	시장조사,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자문, 연구개발활동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여부	서비스 개발,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개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여부	사업개발 및 발굴, 안전매뉴얼 구축, 온라인 마케팅

### ③ 혁신 결과 평가 착안사항

혁신의 결과	내용	혁신 노력 착안사항	분야
혁신결과	재무성과	직접재무 성과로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정량적으로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개선이 결과가 있는지 여부	매출 증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업 수익률, 비용절감, 외부투자유치
		간접적으로 재무성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결과로서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신규거래처 확보, 신규 유통채널 확보, 사업지역 확대, 신규사업수주, 시장점유율 증가, 사업영역확대, 정부사업 수행기관 선정, 신용평가등급 향상, 조직확대
	고객만족	제품과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고객 만족도의 증가에서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만족도 조사, 의견 조사(FGI 등)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가 있는지 여부	고객의견을 반영한 품질 개선,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수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재구매율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대상 확대
	기술적 성과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허 출원 사례가 있는지 여부	특허출원, 디자인, 지적재산권, 상표권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획득 사례가 있는지 여부	공인인증 관련(식품위생, 식품의약품안전처, 친환경 등)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대외적인 우수사례 인정 여부	기술 관련 기관 표창, 입상, 정부 우수기업 선정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자격증, 기술관련 개인 표창 및 입상



## 등급기준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 준
과정의 혁신	5점	S	5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A	4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우수한 수준이다.
		B	3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보통 수준이다.
		C	2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다.
		D	1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0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
혁신의 결과	5점	S	5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A	4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우수한 수준이다.
		B	3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보통 수준이다.
		C	2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D	1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0점	혁신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